#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3

발의연월일: 2020. 7. 1.

발 의 자:유정주・이상헌・이동주

김경협 • 고영인 • 서동용

김민철 • 양이원영 • 박홍근

신동근 • 윤건영 • 진성준

이수진 · 김용민 · 박재호

이용우 · 김종민 · 조승래

임오경 · 노웅래 · 이병훈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국·공립 공연장이나 전 시관 등의 폐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취소 등으로 예술인들이 정상적 인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

방탄소년단(BTS)이나 영화 '기생충'과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에서 활발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이 앞으로 감염병의 유행이 지속적으로 되 풀이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해 도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한 상황의 발생에 따라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한 상황의 발생에 따라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제4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한 상황의 발생에 따라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③ (생 략)	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
	<u>수</u> )
<u>&lt;신 설&gt;</u>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위급한 상황의
	발생에 따라 예술인의 예술 활
	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
계획) ① (생 략)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u>8.</u> (생 략)	<u>9.</u> (현행 제8호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실태조사) ①・② (생	제4조의3(실태조사)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난
	•재해 및 감염병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위급한 상황의 발
	생에 따라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

	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u>④</u> 제1항 및 제3항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